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32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          | 3  |
| ※ 참고자료 .....                       | 16 |
|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 16 |
|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내용 .....         | 18 |
| 3. 2024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현황 ..... | 19 |
| 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방자치단체) 현황 ..... | 20 |

##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9일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하는 수몰이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와 함께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는 소양강댐을 기준으로 연간 출연금의 66%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는 1990년 이후 2022년까지의 주변지역 피해 추정액(최대 10조원)의 약 2% 수준인 1,120억원이 지원된 데 불과하여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 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다

목적댐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비 회수가 완료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를 댐관리청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안 제43조),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의 댐 용수 사용료 수입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등을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며(안 제43조의2부터 43조의4까지 신설),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5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 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완료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                                                                                                                    |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와 사업의 내용, 제2항·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 수립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신 설>

제43조의3(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관리청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43조의4에 따른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출연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제2호에서 정하는 댐사용권자를 제외한

<신 설>

다),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비율의 금액

가.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  
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  
내

나.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  
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  
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  
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  
전전년도의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서 전전년도의 제  
36조에 따른 다목적댐관리비용  
을 제외한 금액

제43조의4(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  
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  
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  
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  
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이

<신 설>

<신 설>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3조의5(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이라 한다)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에 댐주변지역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의6(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댐의 운영·관리 또는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서류·시설·장비 등에 대한 출입·검사의 시기·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  
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  
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  
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댐주변지  
역지원사업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본다.

### < 개정안 주요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 지원사업<br>계획수립권자   | 댐관리청 또는<br>댐수탁관리자<br>(※ 수공, 광주·울산광역시)                          | 환경부장관                                                                                                 |
| 지원사업<br>사업시행 주체  | 댐관리청 또는<br>댐수탁관리자<br>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환경부장관<br>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위탁)                                                                               |
| 지원사업<br>재원 운영 주체 | 댐관리청 또는<br>댐수탁관리자<br>(※ 수공, 광주·울산광역시)                          | 환경부장관                                                                                                 |
| 재원의 관리           | 사업시행자별<br>별도 회계로 관리<br>※ 특별회계 규정 無                             | ⇒ 국가재정법에 따른<br>특별회계로 관리<br>※ 국가재정법 개정안 동시 발의                                                          |
| 소요재원             | ①전전년도 용수판매액의<br>22/100 이내<br>②전전년도 발전판매액의<br>6/100 이내<br><신 설> | ①전전년도 용수판매액의<br>22/100이내<br>②전전년도 발전판매액의<br>6/100이내<br>③전전년도 댐용수사용료<br>수입에서 전전년도 다목적<br>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
| 지원사업<br>관리기구     | <신 설>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

현행법<sup>1)</sup> 상 저수면적 2백만m<sup>2</sup>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sup>3</sup> 이상<sup>2)</sup> 댐의 댐관리청(환경부, 지자체)과 댐수탁관리자<sup>3)</sup>는 댐 건설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전전년도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있음.<sup>4)</sup>

- 
- 1) **법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시행령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 3) **법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4) **법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댐관리청(환경부, 지자체)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 상 댐)** 저수면적 **2백만m<sup>2</sup>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sup>3</sup> 이상**인 댐  
 \* 환경부 댐 37개 댐 중 28개 댐, 지자체 댐 97개 중 2개 댐 시행 중
- **(재원조성)**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 용수댐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 출연
- **(사업내용)**

| 구분    | 사업내용                                 |
|-------|--------------------------------------|
| 지역 지원 | ▶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등     |
| 주민 지원 |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등                   |
| 기타 지원 | ▶ 저수사용료 보조, 사천만 인공방수로 지원, 물 문화관 운영 등 |

그런데, 실제 댐 주변지역에 지원된 사업비를 보면, 평화의 댐, 군남댐 등 매출이 없는 홍수조절댐이나 매출이 적은 소규모 댐의 경우 지원금 또한 매우 적고, 소양강 댐, 충주댐 등 대규모 댐의 경우에도 홍수조절댐과 소규모댐의 지원금을 분담하기 때문에 연간 출연금의 일부만 지원받아 주변지역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및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댐 명              |      | 출연금    | 지원금    | 댐 명              |      | 출연금   | 지원금   |
|------------------|------|--------|--------|------------------|------|-------|-------|
| 다<br>목<br>적<br>댐 | 소양강댐 | 19,278 | 9,951  | 다<br>목<br>적<br>댐 | 용담댐  | 4,022 | 3,676 |
|                  | 안동댐  | 5,227  | 4,761  |                  | 밀양댐  | 538   | 898   |
|                  | 대청댐  | 6,465  | 6,218  |                  | 보령댐  | 1,048 | 1,278 |
|                  | 충주댐  | 32,421 | 15,076 |                  | 평화의댐 | -     | 996   |
|                  | 합천댐  | 6,130  | 3,856  |                  | 장흥댐  | 667   | 1,347 |
|                  | 주암댐  | 4,775  | 4,034  |                  | 군위댐  | 186   | 715   |
|                  | 임하댐  | 2,102  | 2,747  |                  | 군남댐  | -     | 904   |

|             |       |       |       |             |         |     |       |
|-------------|-------|-------|-------|-------------|---------|-----|-------|
|             | 남 강 댐 | 1,465 | 2,533 |             | 부 항 댐   | 159 | 732   |
|             | 섬진강댐  | 1,417 | 2,394 |             | 성 덕 댐   | 84  | 625   |
|             | 부 안 댐 | 252   | 756   |             | 보현산댐    | 115 | 632   |
|             | 횡 성 댐 | 405   | 1,067 |             | 영 주 댐   | 105 | 1,198 |
|             | 한탄강댐  | -     | 1,115 |             |         |     |       |
| 용수댐<br>(국가) | 사 연 댐 | 353   | 359   | 용수댐<br>(지방) | 동북댐(광주) | 878 | 791   |
|             | 수 어 댐 | 1,235 | 674   |             | 회야댐(울산) | 362 | 326   |
|             | 영 천 댐 | 963   | 998   |             |         |     |       |
|             | 운 문 댐 | 1,202 | 1,165 |             |         |     |       |
|             | 대 곡 댐 | 148   | 315   |             |         |     |       |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출연금 및 지원금은 2024년 기준

한편, 댐 사용권자 등은 댐 건설시 부담한 건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댐 저수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납부받고 있음<sup>5)</sup>. 그런데 일부 다목적댐의 경우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어, 그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소양강댐 건설비용 및 추정수입금 현황]

(단위 : 억원)

| 건설비용<br>(1974) | 건설비용<br>(2022, 현재 <sup>6)</sup> ) | 연간 수입금(추정) |                    |                     | 총수입금(추정) |
|----------------|-----------------------------------|------------|--------------------|---------------------|----------|
|                |                                   | 발전판매       | 광역상수도용수<br>(수자원공사) | 댐용수 사용료<br>(지방자치단체) |          |
| 288.38         | 28,838                            | 1444.1     | 233.7              | 208.7               | 94,330   |

자료: 정책특토(2022-03), 강원연구원, 2022.10.20

주: 추정수입금은 전국동일요금(52.7원/m<sup>3</sup>)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5) **법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50년간 물가는 서울 시내버스 120배, 지하철 42배, 택시 63배, 자장면 50배, 소주 20배, 쌀 33배, 돼지고기 48배. 이를 토대로 소양강댐 건설 투자비를 현재의 가치(100배)로 환산(정책특토, 2022-03, 7p)

이에 개정안은 ①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댐관리청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의 사용료 수입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등을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며,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확대를 통해 댐 건설에 따라 피해를 받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동 법 제정<sup>7)</sup>(법률 제6021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1999. 9. 7. 제정) 시 이 법 상의 적용 대상을 환경부 소관 다목적댐에서 지방자치단체 댐(광역시·도)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고, 2011년 개정<sup>8)</sup>(법률제10760호, 2011. 5. 30. 개정)을 통해 시·군 댐으로 확대한 바 있음.

7) 법 제15조(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가 건설한 댐은 당해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댐管理廳"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使用者"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 제1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상 댐관리청으로서 각각 건설한 댐에 대하여 댐의 관리·정비·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만 그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댐건설 주체(댐관리청)와 지원사업 주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사용권자의 사용료 수입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은 댐사용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상 댐사용권은 해당 댐의 사용·수익에 있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물권’<sup>9)</sup>에 해당하고, 댐사용권 설정<sup>10)</sup> 시 설정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sup>11)</sup>을 볼 때 댐사용권자는 댐의 기능이 유지되어 댐사용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댐 건설비용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물권자로서 댐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9) 법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법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11)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댐사용권은 해당 댐의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

셋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은 댐을 관리하는 댐관리청 또는 댐 수탁관리자의 판매수입금으로 전액 충당하고 있고,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동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관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댐으로서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문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이후 댐 운영 수익의 일부를 주변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댐 운영주체의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철도 등 다른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종료 후 주변 지역 및 주민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국가재정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930호, 허영 의원 대표발의)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내용이 규정<sup>12)</sup>되어 있어, 동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547 |

1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참고자료

### 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댐법 제43조제1항)

□ **(대 상 댐)** 저수면적 **2백만m<sup>2</sup>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m<sup>3</sup> 이상**인 댐

| 다목적댐(20)                                                                          | 홍수조절댐(3)       | 용수댐(5)             |
|-----------------------------------------------------------------------------------|----------------|--------------------|
| 소양강,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부항, 성덕, 보현산, 영주, 대청, 용담,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 한탄강댐, 평화의댐, 군남 | 영천, 운문, 사연, 대곡, 수어 |

\* K-water에서 관리중인 37개 댐 중 **28개 댐 시행중** (용수댐 9개소 미시행)

□ **(재원 조성)**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 용수댐 수도사업자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 출연

▶ 연도별 출연금(지원금) 현황

|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출연금 | 737억 | 771억 | 666억 | 614억 | 631억 | 665억 | 706억 | 685억 | 747억 | 764억 |

□ **(사업구역)** ① 댐의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② 댐의 발전소로 2km 이내  
③ 협의회 및 댐관리자 인정지역(인공방수로 방류지역, 수몰이주단지 등)

\* 2023년 기준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 중 59개 시·군·구 대상 시행 (전체 지자체 중 약 24.0%)

□ **(지원사업협의회)** 지원사업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댐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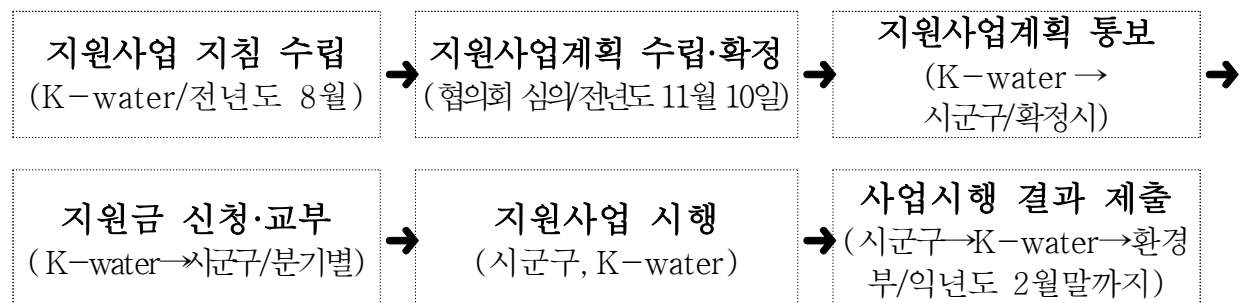
- (구 성) 위원장(시·군·구 부단체장), 위원(공무원, 주민대표, 지사 직원 등)
- (역 할) 사업계획(기타지원 제외) 심의\*, 지원금 배분, 기타 필요사항

\* 기타지원사업은 K-water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위원장:수자원환경부문이사)에서 심의·의결

## □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자

| 구분       | 사업내용 및 성격                                                                                                                             | 시행자              |
|----------|---------------------------------------------------------------------------------------------------------------------------------------|------------------|
| 지역<br>지원 | ·소득원 발굴, 영농시설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 지역단위 지원<br>·지역개발정책 및 발전전략과 연계성을 고려, 지자체 담당<br>*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 지자체<br>(시군구)     |
| 주민<br>지원 |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단위 지원<br>·댐관리자 역할 강구, 지역주민 유대 강화를 위해 K-water 담당<br>*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 K-water<br>(댐지사) |
| 기타<br>지원 | ·일자리 창출, 댐상류 도랑살리기 등 정책·경영방침 사업<br>·지자체 협력 및 현안해소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사업<br>·법정사업, 댐 홍보시설·거버넌스 운영 등 부대사업<br>* 저수사용료보조, 사천만 인공방수로 지원, 물문화관 운영 등 | K-water<br>(본사)  |

## □ 사업시행절차



## 참고자료

##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 내용

□ 「댐건설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별표6]

| 구분            |                 | 세부 사업 내용                                                                                                                                                                                                                                                                                   |
|---------------|-----------------|--------------------------------------------------------------------------------------------------------------------------------------------------------------------------------------------------------------------------------------------------------------------------------------------|
| 1. 지역 지원 사업   | 가. 소득증대 사업      |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br>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br>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br>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br>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br>3)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가축 분뇨 자원화시설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br>4)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
|               | 다. 댐 주변 경관활용 사업 |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 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br>2)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br>3)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 2. 주민 지원 사업   |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br>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나. 육영사업         |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급식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br>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3. 그 밖의 지원 사업 |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
|               | 나. 홍보 및 부대사업    |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부락 지원 등 대민 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br>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br>3) 지역 홍보, 댐 견학 등 댐주변지역 홍보사업<br>4) 녹색생활 실천과 탄소중립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br>5) 주민간담회,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참고자료

## 3. 2024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현황

### □ 계획 총괄

| 구 분     | 계   | 소득증대       | 생활기반 조성 | 댐주변 경관활용 | 주민생활 지원 | 육영사업 | 기타 지원사업  |
|---------|-----|------------|---------|----------|---------|------|----------|
| 사업비(억원) | 907 | 112        | 196     | 47       | 259     | 96   | 197      |
| 시행자     | -   | 지자체(시·군·구) |         |          | K-water |      |          |
| 재원      | -   | 댐별 지원금(지사) |         |          |         |      | 기타지원(본사) |

### □ 지역지원사업(지자체 시행) : 1,488개 사업, 355억

| 사업 구분    |        | 세부 내용              | 사업비(억원) |
|----------|--------|--------------------|---------|
| 계        |        |                    | 355     |
| 소득증대사업   | 소 계    |                    | 112     |
|          | 농림수산업  | 생산물 공동저장시설 등       | 54      |
|          | 환경농업지원 | 친환경 비료·농자재 구입 등    | 5       |
|          | 기타소득증대 | 마을기업·영농조합 운영 등     | 53      |
| 생활기반조성사업 | 소 계    |                    | 196     |
|          | 생활여건개선 | 마을회관 보수, 방송·방범시설 등 | 78      |
|          | 기타생활기반 | 소하천정비, 마을하수도 등     | 118     |
| 댐주변경관활용  |        | 댐주변 둘레길 조성, 환경정비   | 47      |

### □ 주민지원사업(K-water 시행) : 1,057개 사업, 355억

| 사업 구분  |            | 세부 내용                  | 사업비(억원) |
|--------|------------|------------------------|---------|
| 계      |            |                        | 355     |
| 주민생활지원 | 소 계        |                        | 259     |
|        | 생계지원       | 생계비생필품, 난방·전기통신 등 지원   | 23      |
|        | 효센터 운영     | 댐 주변 노인대상 다양한 문화·건강 등  | 35      |
|        | 의료·건강지원    |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료 등 지원      | 9       |
|        | 주거환경개선     | 저소득층 집수리, 방범CCTV 설치 등  | 9       |
|        | 기타주민생활     | 가사간병도우미, 마을행사, 친환경영농 등 | 183     |
| 육영사업   | 소 계        |                        | 96      |
|        | 학습여건 개선·확충 | 원어민영어교육, 방과 후 교실 등 지원  | 26      |
|        | 학자금·장학금    | 댐 주변 주민 교육비 경감 등       | 16      |
|        | 교육기자재·도서   | 댐 주변 학교 학습기자재 지원       | 6       |
|        | 급식지원       | 학교급식시설 운영·지원 등         | 5       |
|        | 기타육영       | 체험학습, 해외연수, 경진대회 지원 등  | 42      |

## 참고자료

## 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

□ 10개 시·도, 59개 시·군·구

| 구 분    |      | 지자체                              |
|--------|------|----------------------------------|
| 한 강 유역 | 군남댐  | (경기) 연천군                         |
|        | 한탄강댐 | (경기) 연천군, 포천군 (강원) 철원군           |
|        | 평화의댐 | (강원)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
|        | 소양강댐 | (강원)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
|        | 횡성댐  | (강원) 횡성군                         |
|        | 충주댐  |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 금 강 유역 | 대청댐  | (대전) 대덕구,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        | 보령댐  |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
|        | 용담댐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충남) 금산군 |
|        | 부안댐  | (전북) 부안군                         |
| 영·섬 유역 | 섬진강댐 |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
|        | 주암댐  | (전남)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
|        | 수어댐  | (전남) 광양시                         |
|        | 장흥댐  |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
| 낙동강 유역 | 영주댐  | (경북)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
|        | 안동댐  | (경북) 안동시, 봉화군                    |
|        | 임하댐  |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
|        | 성덕댐  | (경북) 청송군, 의성군, 영천시, 포항시, 안동시*    |
|        | 군위댐  | (경북) 군위군, 영천시, 의성군               |
|        | 보현산댐 |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천시, 포항시          |
|        | 영천댐  | (경북) 영천시, 포항시                    |
|        | 부항댐  | (경북) 김천시                         |
|        | 운문댐  | (경북)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
|        | 합천댐  | (경남) 합천군, 거창군                    |
|        | 사연댐  | (울산) 울주군                         |
|        | 대곡댐  | (울산) 울주군                         |
|        | 밀양댐  | (경남) 밀양시, 양산시                    |
|        | 남강댐  |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

\* 안동시는 성덕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은 아니나 협의회를 통해 대상에 포함